



유류분 바로알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어떻게 주장할까?

60대 여성인 A씨는 아들과 딸이 있다. A씨는 아들을 편애하여 증여 및 유언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딸은 오빠가 과다하게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이런 경우 A씨의 딸은 다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유류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상속인 중 1인에게 과도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분배 권리를 말한다. 즉,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생전 개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상속인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한 법적 장치이다.

최근 은행을 통한 법률상담, 세무상담이 활성화되면서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적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때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류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유류분은 사망자가 증여한 재산까지 감안해 산정하므로 세금을 내고 신고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과도한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bhs0319@hanafn.com

- ▶ **학력·자격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변호사
- ▶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
- ▶ **경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위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자문
SBS스페셜(상속), 서울경제 TV 등 출연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 등 언론기고
(現)한국 가족법 학회 정회원



Q1.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유류분 산정 시 그 재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액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산정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취득이 자유롭다.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팔아버렸더라도 동일 주식을 다시 사서 반환할 수 있다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Q2.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였다도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법인에 증여하였다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도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에 시행되었으므로 1979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Q3. 유류분 청구의 기간은?

유류분은 통상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상속이 발생했다는 사실 모두를 당사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 개시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 요약표

구분	내용
청구인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4촌 이내의 혈족은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유류분권 없음)
상대방	증여 및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
유류분 청구권의 포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무효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효
유류분 비율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1/2 상속인에 해당하는 부모, 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	상속개시사실과 증여 및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았다는 것을 모두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다만 이 경우 증여나 상속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나 상속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유류분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Q4. 유류분 포기각서는 유효한가?

간혹 자신이 사망한 후 가족분쟁이 발생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생전에 일정한 재산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 돌아가실 분의 강압적인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속 개시 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다. 상속 개시 후, 언제든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포기를 했다는 것은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Q5.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어떻게 되나?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위 판례는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례이지만 일반적인 상속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손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증여의 경위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

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Q6. 유류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유언으로도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공증받은 유언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유언을 통하여 장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가 유류분 만큼의 재산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결국 유류분 분쟁을 피하려면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류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로 일명 효도상속분이라고 한다. 효도를 통한 기여상속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이 줄게 되는데 이는 유류분 금액을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소송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ㅎ

summary

- ① 유류분 반환 시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아닌 상속개시 시 시 가격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②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였다도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속 개시 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다.